

서울고등법원 2022. 2. 11 선고 2021나20257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2. 11 선고 2021나202572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가합161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21. 11. 24.

판결선고 2022. 2. 1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가합161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978. 12. 26. 접수 제1127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위 각 부동산 중 각 6/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12. 4. 접수 제1866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각 부동산 중 각 16/2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9. 5. 15. 접수 제728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8.자 합의와 어머니 묘소 성역화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및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접수 제7281호로” 다음에 “2019. 1. 30.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37” 다음에 “, 41 내지 51”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현, 판사 박성준, 판사 천지성

별지